

1. 개정이유

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지원과 의원입법 관련 범정부 총괄·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설치한 법제조정정책관의 평가기간을 2025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8. 00. ~ 8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1호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5년 9월 30일”을 “2027년 9월 30일”로 하고, 같은 표 제3호의 평가기간란 중 “2026년 6월 30일”을 “2027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